

[별표 6] <개정 2008.3.14>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근해	-	0.85	1.00
연해 및 평수	24시간 이상	0.85	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	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	0.55
	1.5시간 미만	0.30	0.35

비 고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5
1.5시간 미만	40

비 고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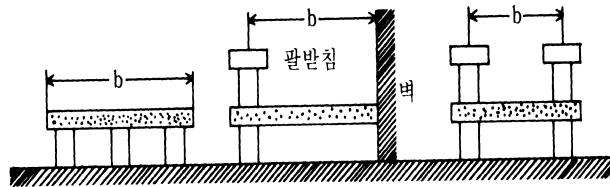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결터났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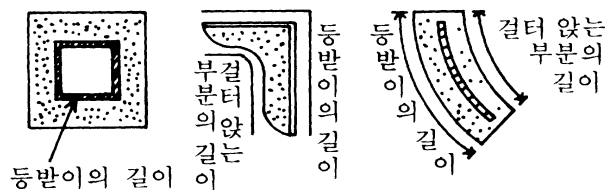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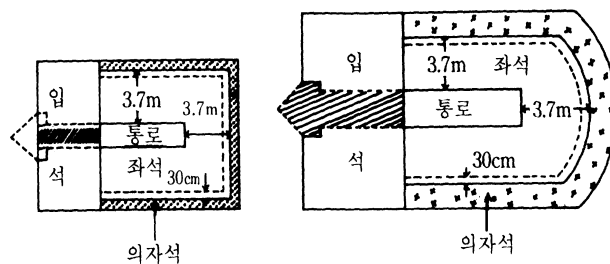


그림 3

-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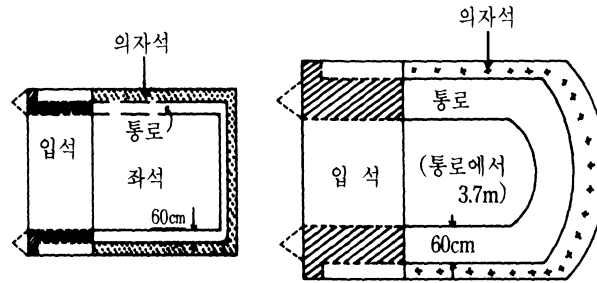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
수로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0.35
1.5시간 미만	0.30
비 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 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 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 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견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매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
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
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
수송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견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

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 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2.35
3,000톤 이상의 선박	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 외의 선박		여객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	3.75	5.5	2.35	4.7	7.05	9.4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4.25	6.5	3.75	6.60	9.00	12.00
10,000톤 이상	4.75	7.5				

비 고

-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침실의 1명당 바닥 면적은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총톤수 3,000톤 미만인 선박은 6.50제곱미터,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7.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선박은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침대수와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위의 외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어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채낚기 어선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0.55
		위의 이외의 어선	0.85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1.10

6.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7.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은 선원실의 정원산정기준을 적용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제7호에 따른 임시승선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이하 이 호에서 "소형선박등"이라 한다)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등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구멍부기 또는 구멍뿔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지정할 수 있다.

$$\frac{353 \times (0.55L \cdot B \cdot D)}{1000} + 3$$

이 식에서

L은 선박의 길이(미터)

B는 선박의 너비(미터)

D는 선박의 깊이(미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으로서 어선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지정할 수 있다.

$$\text{총톤수} \times 2 + 3$$

1) 연해구역(평수구역의 경계부터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을 항해하는 여객선에 준하는 구멍설비(주간에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로켓낙하산신호를 제외한다)를 비치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루와 상갑판 위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박길이의 8분의 1 사이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다.

가) 핸드레일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일 것

어선의 규모(톤)	불위크를 포함한 핸드레일의 높이(밀리미터)
3톤 미만	700
3톤 이상 5톤 미만	800
5톤 이상 7톤 미만	900
7톤 이상	1000

나) 핸드레일의 지주간 간격은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횡봉과 횡봉의 간격은 380밀리미터 이내이고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은 230밀리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횡봉은 체인·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갑판실 외부 양측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스톱레일을 설치할

것

- 4) 선미장출갑판 등 적당한 장소에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할 것
-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기준에 따른 해당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소형선박등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어선의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좌석 정원은 0.45제곱미터를 1명당 단위면적으로 하여 산정하고, 정수를 인원수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등(어선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